

모바일 신분증 안내자료

□ 개 요

○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,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, 정부 앱에서만 보급 중이던 것을 민간개방을 통하여 민간 앱(삼성월렛 (구, 삼성페이))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3.20.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

-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'22.7.부터 정식 발급*,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'23.8.부터 정식 발급** 중

*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에서 정식 발급

** 전국 6개 국가보훈지방청 및 21개 국가보훈지청에서 정식 발급

※ 이동통신사(PASS)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에 유의

□ 모바일 신분증 개념

○ (개 념) 각 신분증 소관법*에 따라 각 발급기관의 장**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·저장하는 운전면허증 및 국가보훈등록증

- 각 소관법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

* 운전면허증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, 국가보훈등록증: 국가유공자법 시행령

** 운전면허증: 지방경찰청장, 국가보훈등록증: 보훈(지)청장

○ (발 급) 최초발급 시 관공서*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,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

* 운전면허증: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, 국가보훈등록증: 지방보훈(지)청

○ (활 용)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·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, 신원확인자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,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

○ (개인정보보호) 사용처(신원확인자)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

※ 예 : (편의점) 성인여부, (렌터카) 운전면허자격 정보, (공공기관) 주민번호, 성명

정부앱 모바일 신분증 뒷면



정부앱 모바일 신분증 앞면



민간앱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(예시)



민간앱 모바일 운전면허증(예시)



□ 협조요청

- 민원업무, 민간 사업자 등 운전면허증, 국가보훈등록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정부앱 또는 민간앱(삼성윌렛 (구, 삼성페이))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제시 시 신원 또는 운전(운전면허증)·보훈(국가보훈등록증)자격 증명수단으로서 인정하여야 함
 - ‘모바일 신분증’ 관련 일선 민원창구 등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직원에게 안내 및 교육 당부
 -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장직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① 육안확인하거나 ② 검증앱*(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)으로 신원확인
 - *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검증앱으로 촬영 → 검증앱으로 운전면허증·보훈등록증 정보 확인
 - 검증앱 이용의 경우, 검증앱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설치* 필요
 - * 앱마켓(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, 윈스토어)에서 ‘모바일 신분증 검증앱’을 검색 다운로드
- 검증앱이 아닌 특화된 신원확인 방법(예 :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한 성인여부 검증 확인)이 필요한 기관·기업은 별도 연계 협의(개발지원센터 ☎ 042-870-1499, dev.mobileid.go.kr)
-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국가보훈등록증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기관 내 모든 부서, 소속기관 등에 전파 및 안내 (대민 업무부서, 민원실 창구, 보건소 등 포함)
 - 각 부서는 업무상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모든 소관 산하기관 및 협회·단체 등에 전파·안내하고, 협회·단체 등은 모든 회원사 및 현장 직원까지 전파 및 홍보·안내 당부

1 육안 확인

- 운전면허증·국가보훈등록증과 동일한 이미지를 육안으로 확인 하되, 위변조 이미지와의 구별을 위해 동적이미지(현재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, 배경무늬 움직임) 확인 필요



2 검증앱 활용

- 모바일 신분증 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,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(Wifi 등 연결필요)에 검증앱을 설치하여 검증기능 활용
 - ※ 앱마켓(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, 원스토어)에서 '모바일 신분증 검증앱'을 검색 후 다운로드
- 특히, 민원창구 등 잦은 신원확인과 진위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태블릿과 QR리더기(블루투스 지원 제품) 구비 권장 (총 약 30만원 상당)





□ **설치방법**

- 앱마켓(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, 윈스토어)에서 '모바일 신분증 검증앱'을 검색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다운로드·설치

□ **사용방법**

- 검증앱의 'QR촬영하기' 기능을 누르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민원인(고객)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
 - 블루투스 리더기 등 'QR리더기'를 설치해서도 QR인식이 가능

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방법	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고객·민원인) 「모바일 신분증앱」에서 '나의QR'표출 ② (확인자) 검증앱 'QR촬영하기'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 및 신원정보 요청 ③ (고객·민원인) 「모바일 신분증앱」에서 승인 ④ (확인자) 검증앱에서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
	

□ **사용절차**

- ① 검증앱에서 확인할 정보를 선택 후, ② 'QR촬영하기' 또는 연결된 'QR 리더기'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인식하면, ③ 민원인(고객)이 승인 후, 진위확인된 정보가 검증앱에 표출

 <p>① 신원확인할 정보 선택</p>	 <p>② 고객·민원인의 QR 촬영</p>	 <p>③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</p>
--	--	--

□ 검증앱의 진위확인절차(예시)

신원확인자(창구직원 등)



① 신분증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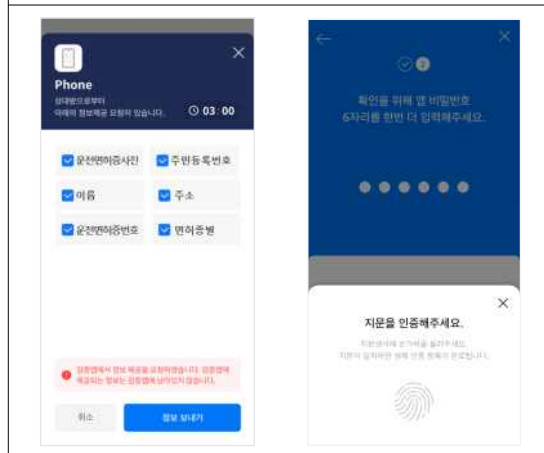
모바일 신분증 소지자



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보여주기



③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



④ 요청받은 정보 확인 및 보내기



⑤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

□ **도로교통법 제85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**

제85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 ②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

□ **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**

제77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
2.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(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, 이하 “영문운전면허증”이라 한다)
3.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**모바일운전면허증(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, 이하 “모바일운전면허증”이라 한다)**

제78조의2(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) ①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(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)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**모바일운전면허증**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,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**모바일운전면허증**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**모바일운전면허증**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(IC, Integrated Circuit) 칩을 포함할 수 있다.
- ⑤ **모바일운전면허증**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.
-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·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□ **국가유공자법 시행령**

- 제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, 제101조(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)

제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(생략) ② (생략)

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(**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**)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101조(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**국가보훈등록증(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**을 발급한다.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.

1.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(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)이나 선순위 유족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~3. (생략)

□ **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7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**

제17조(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·재발급 등)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**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**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.

② 영 제10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·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③ 영 제101조제2항제3호에서 “성명,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대상 구분, 보훈번호,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.

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.

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(IC: Integrated Circuit)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.

⑥ 영 제10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각각 별지 제55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7서식까지에 따른다.